

생산 농촌지원과-
(2023. 11. 10.)



담당자	유통지원팀장	농촌지원과장	농업기술센터소장	부군수	군수
김현경	김병현	김희재	유영미	김수현	김복현
협조	기획예산실장 박성민		법무팀장 권영진		

군민과 함께하는 새로운 영덕

영덕군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요지】

○ 제안이유

- 상위법령인 「학교급식법」 등의 개정을 조례에 반영
-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자구를 정비

○ 주요내용

- 유치원도 학교급식의 대상에 추가(안 제2조제1호)
- 학교급식과 관련한 상위법령의 제명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안 제2조제3호)
- 이중 규정 삭제(안 제5조제4항, 제6조제3항, 제8조제6항, 제10조제5항, 제11조제4항)
-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자구를 정비



영 농 촌 덕 지 원 과

영덕군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법제처는 상위법령의 제·개정, 폐지 등의 사항이 자치법규에 반영되지 않거나 그 내용이 현실과 맞지 않는 경우가 많음에 따라 '2022년도 제1차 상위법령 불부합 및 사문화 자치법규 일제 정비계획'을 수립, 추진한 후 그 결과를 통보하였음.

이에 따라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본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상위법령인 「학교급식법」 등의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아울러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어문규정에 맞게 자구를 정비하는 등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도 학교급식의 대상에 추가된 「학교급식법」 제4조의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함(안 제2조제1호)

나. 학교급식과 관련한 상위법령의 제명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함(안 제2조제3호)

「농산물품질관리법」이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친환경농업육성법」이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축산물가공처리법」이 「축산물 위생관리법」으로 개

정됨에 따라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상위법령의 제명을 정리함
다.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하도록 한 조문이
있음에도 해당되는 개별 조문에서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여 이중 규
정한 사항을 삭제함(안 제5조제4항, 제6조제3항, 제8조제6항, 제10
조제5항, 제11조제4항)

라. 그 밖에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자구를
정비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학교급식법」

나. 예산조치: 별도 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대상기관 없음

라. 기 타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1

2) 입법예고: 2023. 11. 예정

3)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4) 비용추계서: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별첨 2

5) 성별영향 분석평가 결과: 검토 중, 별첨 3

영덕군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덕군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학교급식법」 제5조제3항 내지 제5항과 제8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를 “「학교급식법」 제3조 및 제5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로, “관하여 필요한”을 “필요한”으로 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급식”이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학교급식법」 제4조에 따른 급식대상의 학교 및 유치원에서 실시하는 급식을 말한다.
2. “급식경비”란 학교급식을 위한 식품비, 급식운영비 및 급식시설·설비비 등에 필요한 경비를 말한다.
3. “우수 식재료”란 학교급식을 목적으로 조리·가공하는데 사용되는 음식의 원재료로서, 유전자변형이 되지 않은 안전하고 신선한 농·축·수산물 및 이를 원료로 하여 제조 또는 가공한 식품으로서 공급과 유통이 투명하여 역순으로 추적이 가능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것을 말한다.
 - 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른 표준규격품, 품질인증품, 지리

적표식품, 이력추적관리농산물, 우수관리인증농산물

나.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친환경농산물, 유기식품

다. 「축산법」에 따른 일정등급 이상의 축산물로서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위생 및 안전관리인증을 받은 축산물

라. 「식품산업진흥법」에 따른 전통식품인증을 받은 식품

마. 「식품위생법」에 따른 위해요소 중점관리 기준에 적합한 식품

바. 그 밖에 영덕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인증한 우수 농·축·수산물

4. “학교급식지원센터”란 군수가 학교급식에 안전하고 우수한 식재료를 공급하기 위하여 원활한 생산과 수급 및 지원예산의 투명한 집행을 지도·감독하며 공급관리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운영체계를 말한다.

제4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1. 「학교급식법」 제4조에 따른 급식대상 학교 및 유치원

제5조제1항 중 “제2조에서 규정한 안전하고 품질이우수한”을 “우수한”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3호 중 “추진하고, 원활한 공급 및 물류를 위해 비영리법인 또는 자원봉사단체 등 민간기구와의 계약에 의하여 업무를 위임할 수 있다”를 “추진한다”로 하며, 같은 항 제4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한다.

제6조제1항제6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를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

제8조의 제목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설치)”를 “(위원회의 설치)”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위원회”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위원장을 포함하여 15인”을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으로,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을 “다음 각 호의”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영덕교육지원청(이하 “교육청”이라 한다) 담당과장

제8조제2항제9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자”를 “사람”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부위원장 1인”을 “부위원장”으로, “간사 1인은”을 “간사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단체가 추천한 자로서”를 “제2항제3호부터 제9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로 하고,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제8조제6항을 삭제한다.

제9조의 제목 “(학교급식심의위원회의 기능)”을 “(위원회의 기능)”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기타”를 “그 밖에 군수 및 영덕교육지원청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이”로, “관하여 군수 및 교육장이 요구한”을

“필요하다고 인정하는”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학교급식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학교급식지원센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원센터”를 “학교급식지원센터”로 하며, 같은 항 제7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원센터”를 “학교급식지원센터”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급식지원센터”를 “학교급식지원센터”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을 삭제한다.

제11조제1항 중 “지원센터”를 “학교급식지원센터”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한다.

제12조 중 “관하여 필요한”을 “필요한”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급식법」 제5조제3항 내지 제5항과 제8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학교급식에 안전하고 우수한 식재료 사용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및 학교급식지원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목적) ----- 「학교급식법」 제3조 및 제5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 ----- ----- ----- ----- 필요한 ----- -----.</p>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학교급식”이라 함은 제1조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학교급식법」 제4조에 의한 급식 대상의 학교와 「유아교육법」 제7조에 의한 유치원에서 실시하는 급식을 말한다.</p> <p>2. “급식경비”라 함은 학교급식을 위한 식품비, 급식운영비 및 급식시설·설비비 등에 필요한 경비를</p>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학교급식”이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학교급식법」 제4조에 따른 급식 대상의 학교 및 유치원에서 실시하는 급식을 말한다.</p> <p>2. “급식경비”란 학교급식을 위한 식품비, 급식운영비 및 급식시설·설비비 등에 필요한 경비를 말한다.</p> <p>3. “우수 식재료”란 학교급식을 목적으로 조리·가공하는데</p>

말한다.

3. “우수 식재료”라 함은 학교급식을 목적으로 조리·가공하는데 사용되는 음식의 원재료로서, 유전자변형이 되지 아니한 안전하고 신선한 농·축·수산물 및 이를 원료로 하여 제조 또는 가공한 식품으로서 공급과 유통이 투명하여 역순으로 추적이 가능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것을

말한다.

가. 「농산물품질관리법」에 의한 품질인증 농산물

나. 「친환경농업육성법」에 의한 생산물로 지역 환경보전에 기여하는 친환경농산물

다. 「축산법」 및 「축산물가공처리법」에 의한 일정등급 이상의 축산물로서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이 적용된 축산물

라. 「농산물 가공산업 육성법」에 의한 품질인증품

사용되는 음식의 원재료로서, 유전자변형이 되지 않은 안전하고 신선한 농·축·수산물 및 이를 원료로 하여 제조 또는 가공한 식품으로서 공급과 유통이 투명하여 역순으로 추적이 가능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것을 말한다.

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른 표준규격품, 품질인증품, 지리적표시품, 이력추적관리농산물, 우수관리인증농산물

나.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친환경농산물, 유기식품

다. 「축산법」에 따른 일정등급 이상의 축산물로서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위생 및 안전관리인증을 받은 축산물

라. 「식품산업진흥법」에 따른 전통식품인증을 받은 식품

마. 「수산물품질관리법」에
의한 품질인증품(원양산
포함)

바. 생산자단체 또는 시·도
지사·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군수·자치구청장
이 인증한 농특산물

4. “학교급식지원센터”라 함은
영덕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가 학교급식에 안전하고 우수
한 식재료를 공급하기 위하여
원활한 생산과 수급 및 지원
예산의 투명한 집행을 지도·
감독하며 공급관리 기능을 수
행하기 위한 운영체계를 말한
다.

제4조(지원대상) 지원대상은 영덕
군에 소재하며, 다음 각 호의 하
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학교급식법」 제4조에 의한
급식대상 학교
2. 「유아교육법」 제7조에 의한
유치원
3.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
정하는 시설

제5조(지원방법) ①군수는 지원대

마. 「식품위생법」에 따른
위해요소 중점관리 기준에
적합한 식품

바. 그 밖에 영덕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인증한
우수 농·축·수산물

4. “학교급식지원센터”란 군수
가 학교급식에 안전하고 우수
한 식재료를 공급하기 위하여
원활한 생산과 수급 및 지원
예산의 투명한 집행을 지도·
감독하며 공급관리 기능을 수
행하기 위한 운영체계를 말한
다.

제4조(지원대상) -----

-----.

1. 「학교급식법」 제4조에 따
른 급식대상 학교 및 유치원
<삭 제>

3. 그 밖에 -----

제5조(지원방법) ①-----

상 학교 및 시설의 장으로 하여금 제2조에서 규정한 안전하고 품질이우수한 식재료가 사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지원방법은 현물 또는 현금으로 지원하되, 학교급식지원센터를 통하여 다음 각호와 같은 방법으로 시행할 수 있다.

1. 2. (생략)

3. 학교급식지원센터를 통하여 지원하는 경우 생산자 단체와의 계약생산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원활한 공급 및 물류를 위해 비영리법인 또는 자원봉사단체 등 민간기구와의 계약에 의하여 업무를 위임할 수 있다.

4. 제3조에 의거 군수로부터 업무를 위임받은 자는 지원업무를 대행하는 지정공급자로서 군수의 지도·감독과 지휘를 받아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③ (생략)

④ 군수는 제3조에 의한 급식경비 및 우수 식재료 지원범위와 지원금액 산정, 급식지원센터

-- 우수한 -----

② -----

1. 2. (현행과 같음)

3. -----

추진한다.

<삭제>

③ (현행과 같음)

<삭제>

방법, 규모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②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인 이내로 하며,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

1. (생략)
2. 영덕교육청 담당과장
3. ~ 8. (생략)
9.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③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 1인은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간사 1인은 관련업무 담당공무원이

④당연직 위원은 관계기관 공무원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단체가 추천한 자로서 군수가 위촉한다. <후단 신설>

----- 위원회 -----

② -----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
----- 다음 각 호의 -----

1. (현행과 같음)
2. 영덕교육지원청(이하 “교육청”이라 한다) 담당과장
3. ~ 8. (현행과 같음)
9. 그 밖에 -----
----- 사람

③ ----- 부위원장 -----
----- 간사는 -----

④ ----- 제2항제3호부터 제9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
-----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

⑤ (생 략)

⑥기타 위원회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학교급식심의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 4. (생 략)

5. 기타 학교급식 지원 및 개선에 관하여 군수 및 교육장이 요구한 사항

제10조(학교급식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군수는 「학교급식법」에 따라 학교급식에 지원되는 식재료의 원활한 생산과 물류, 공급관리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학교급식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②지원센터의 형태는 공공성과 공익성을 가진 비영리 법인 형태로서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하며 별도의 시설을 설립·운영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다.

⑤ (현행과 같음)

<삭 제>

제9조(위원회의 기능) -----

-----.

1. ~ 4. (현행과 같음)

5. 그 밖에 군수 및 영덕교육지원청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이 ---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

제10조(학교급식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 학교급식지원센터-----

-----.

②학교급식지원센터-----

-----.

1. ~ 6. (생략)

7. 기타 급식지원에 관한 사항

③군수는 지원센터를 운영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업무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거쳐서 부대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 5. (생략)

④군수는 필요시 급식지원센터 업무와 시설의 일부를 비영리법인 또는 자원봉사단체 등 민간 기구에위탁·운영 할 수 있다.

⑤지원센터 시설의 설치와 위탁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결정하되 운영과 관련한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지도·감독 및 정보공개)

①군수와 교육장은 필요시 지원 대상자와 지원센터 업무를 위임 받은자에 대하여 급식재료와 관련하여 조사할 수 있고, 정산자료를 검토하여 지원된 자금이 목적대로 성실히 이행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생략)

1. ~ 6. (현행과 같음)

7. 그 밖에 -----

③----- 학교급식지원센터 -----

1. ~ 5. (현행과 같음)

④----- 학교급식지원센터 -----

<삭제>

제11조(지도·감독 및 정보공개)

①-----
----- 학교급식지원센터 -----

② (현행과 같음)

③군수는 학교급식지원의 현황 및 지역의 농·축·수산물 생산 및 공급관련 정보를 당해 기관의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투명하게 공개하여야 한다.

④기타 학교급식 경비 지원금의 집행에 관한 지도·감독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

----- 해당 -----

-----.

<삭 제>

제12조(시행규칙) -----
-- 필요한 -----
-----.

[별첨 2]

영덕군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재정수반 요인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영덕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 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 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됨

4. 작성자

농업기술센터 농촌지원과 유통지원팀장 김 봉 훈(054-730-6271)

<참고자료>

관 계 법 령

「학교급식법」

제4조(학교급식 대상) 학교급식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 또는 학급에 재학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개정 2012. 3. 21., 2019. 12. 10., 2020. 1. 29., 2021. 3. 23.>

1.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유치원은 제외한다.
2.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
3. 「초·중등교육법」 제52조의 규정에 따른 근로청소년을 위한 특별학급 및 산업체부설 중·고등학교
4.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3에 따른 대안학교
5.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

제5조(학교급식위원회 등) ① 교육감은 학교급식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그 소속하에 학교급식위원회를 둔다. <개정 2021. 12. 28.>

1. 제3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학교급식에 관한 계획
2. 제9조의 규정에 따른 급식에 관한 경비 및 식재료 등의 지원
3. 그 밖에 학교급식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으로서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학교급식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은 제8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그 소속하에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④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은 우수한 식자재 공급 등 학교급식을 지원하기 위하여 그 소속하에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⑤ 제3항의 규정에 따른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과 제4항의 규정에 따른 학교급식지원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